

공공기관 현장에서 중소기업제품 실증 지원

- 2023년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기술개발 신제품의 공공구매 확대를 통한 초기 판로지원을 위해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 지원 사업」을 신규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 실증 : 신제품을 공공기관 현장에서 직접 사용함으로써 기술과 성능을 검증하는 것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되었으며,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 현장 등에서 직접 실증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을 연계(매칭)해 제품 실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 정부 부처가 평가를 통해 중소기업 제품에 인증서 등을 발급한 제품군(群)으로 중소기업부가 발급한 '성능인증' 등 14종이 신청 가능(참고2)

동 사업은 공공기관 수요를 받아 기술개발제품 신제품을 찾는 '공공기관 수요형'과 중소기업이 특정 공공기관에 신제품 실증을 제안하는 '중소기업 제안형'으로 유형이 나뉘어진다.

공공기관 수요형은 그간 공공기관에서 사전에 수요 조사를 받아왔으며, '음장분석*을 통한 침입 및 화재 감지 기술개발제품(한국남동발전 제안)' 등 총 8개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실증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찾는 방식이며, 중소기업 제안형은 특정 공공기관에 납품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공공기관과 연계(매칭)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 음장분석(Sound Field) : 소리가 일정 공간에서 형성되면 음장 변화를 분석하여 화재 발생 전 발원지의 비정상적인 온도변화를 감지하는 기술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에 선정되면 실증에 필요한 제품 설치비, 철거비, 공인시험성적서 비용 등을 제품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현장실증 비용 부담비율 : 정부 80%(상한 3,000만원), 참여기업 20% 부담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동 사업에서 실증에 성공한 기술개발제품 신제품은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신제품의 공공기관 판로개척을 위해 하반기에 공공기관 구매 상담회 등 우수한 기술개발제품의 판로지원이 연계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신청접수는 9월 1일(금)부터 10월 4일(수)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또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누리집(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신청·접수 문의 : 중소기업부 판로정책과(044-204-7497)

중소기업유통센터 공공구매지원센터(042-712-5632, 5635)

담당 부서	글로벌성장정책관실 판로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희정 (044-204-7540)
		담당자	사무관	정익채 (044-204-7497)



참고 1

2023년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개요

☐ 목적

- 기술개발 신제품의 공공기관 실증 테스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 판로 촉진 및 공공구매 확대에 기여

☐ 관련 규정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1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 제13조의5
 -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선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 지원 규모 : 20개 과제 내외(한 과제당 3,000만원 이내 지원)

*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참여 대상

- (공공기관)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
 - * 공기업, 준정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의료원, 교육기관, 지자체 등
- (중소기업) 영 제13조의5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조합제외)

☐ 참여 유형

참여 유형	유형 내용
공공기관 수요형	공공기관이 사전에 현장 실증이 필요하다고 제출한 수요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신청
중소기업 제안형	공공기관 현장에 설치하여 실증테스트가 필요한 기술개발제품 등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신청

☐ 지원 내용

- (현장실증비 지원) 제품 당 3,000만원 한도 내 현장 실증비용 지원
- (현장실증비 비율) 정부 80%(한도 3,000만원), 참여 중소기업 20% 부담

참고 2

현장검증 지원사업에 신청 가능한 기술개발제품群

□ 신청가능 제품 (공고일로부터 인증 잔여 유효기한이 90일 이상인 제품)

연번	인증·지정명		관련 근거	소관부처	유효기간 적용
1	성능인증(EPC)		판로지원법 제15조	중소벤처기업부	인증기간과 동일
2	우수조달물품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0조	조달청	지정기간과 동일
3	NEP(신제품인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산업통상자원부	유효기간과 동일
4	GS(1등급)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증일로부터 3년
5	NET 신기술 인증 적용 제품	과학기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산업통상자원부	유효기간과 동일
		환경	환경기술산업법 제7조	환경부	
		건설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국토교통부	
		재난안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행정안전부	
		목재	목재이용법 제18조	산림청	
		농림식품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계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	농림축산식품부	
		교통	통합교통체계법 제102조	국토교통부	
		보건의료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	보건복지부	
		해양수산	해양수산과학기술법 제17조	해양수산부	
		물류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6	우수조달공동상표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1조	조달청	지정기간 동일
7	수요처가 지정된 기술개발제품 (수의계약용 확인서 必)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 * ①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구매연계형(공공부문) * ②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공동투자형(공공부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 ③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 성공제품(공공부문)	중소벤처기업부	최초성공 통보일 또는 성공후 해당 수요처와 최초계약일로부터 3년
8	재난안전제품인증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	행정안전부	유효기간과 동일
9	혁신제품		조달사업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33조	조달청 등	지정기간과 동일
10	녹색기술제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조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효기간과 동일
11	산업융합 혁신품목		산업융합 촉진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6조	산업통상자원부	유효기간과 동일
12	산업융합 적합성 인증제품		산업융합 촉진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6조	산업통상자원부	인증일로부터 3년
13	물산업 우수제품등		물산업진흥법 제10조	환경부	지정기간과 동일
14	상생협력제품		판로지원법 제20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유효기간과 동일

참고 3

공공기관 수요형 목록 및 중소기업 제안형 예시

□ 공공기관 수요형 목록 (공공기관 수요형 과제 신청 가능 목록)

NO	수요 공공기관명	수요명
1	한국남동발전(주)	음장 분석을 이용한 침입 및 화재 감지 기술
2	한국공항공사	바코드와 형상 인식 접목 수하물 분류 시스템
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가변형 테이블 리프트 낙하사고 산업재해 예방
4	한국광해광업공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ICT기반 탈수슬러지 평탄화 기술 장치
5	양주시공사	도시시설물 원격제어, 화재, 기계오류 등 감지 스마트 통합 관리 기술
6	의왕도시공사	전송데이터 탐지 및 차단이 가능한 불법카메라 탐지 기술 제품
7	영등포시설관리공단	시설물 탄소저감 및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윈도우 열차단 필름 기술
8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누설전류 제한 기술이 적용된 LED 기술

□ 중소기업 제안형 예시 (제안하는 공공기관의 협조 필요)

구분	제안명 (예시)	세부품명	제안 공공기관	제안 사유 예시 (요약)
중소기업 제안형 (예시)	가스 및 증기터빈 온도센서 방열 및 내진동 구조개선 국산기술이 적용된 제품	열전대	한국○○발전(주)	기존 외산 제품기술 대비 ○○국산 기술적용으로 개선이 된 기술개발제품을 해당 공공기관 현장에서 실증
	자가오류 점검 및 수명예측 자동 분석 기술이 적용된 화력 점화장치	엔진점화 시스템	한국○○공사	기존 수작업으로 진행한 오류개선을 자동화 하고, 제품 수명이 수차화됨으로써 정상적 설비작동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신제품을 현장에서 실증
	저녹스 잉여가스 연소설비 기술이 적용된 연소기 제품	잉여가스 연소기	한국○○공단	바이오가스 잔여가스 대기 방출 시 와류가스 형성으로 완전연소를 유도하는 신기술 제품을 관련 공공기관에서 실증

* 단순 구매 또는 일반적 기술이 반영 제품으로 실증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제품은 검토·평가 단계에서 제외 될 수 있음